

내부회계관리제도 뉴스레터

May 25, 2020

In this Issue

- I. Law & Regulation
- II. Articles
- III. FAQ
- IV. News
- V. Events

Key Contacts

삼성 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TFT 는 회계제도의 변혁에 대한 대응과 내부통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TFT 는 K-SOX Newsletter 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뉴스기사, 법제도 동향, 전문가 보고서, Q&A 등을 제공하고, 더불어 교육 및 강연 등 이벤트 소개를 통해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여 추진하시는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K-SOX'는 Korea Sarbanes-Oxley Act 의 약자로,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의미합니다. 본문의 제목을 클릭하여 관련 보도자료, 보고서 등을 다운받거나 뉴스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 Law & Regulation

최근의 법률 제·개정 내용 및 감독당국의 감독방향과 실무지침에 관한 정보

금융감독원,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및 제도 실시 예정

(‘20.4.10, “2020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2020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함(4.10)
- 2020년 금융감독원의 중점추진과제 중 하나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및 제도**를 명시하였음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관련 실태분석 등을 통해 유용한 정보 안내 예정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시 검토사항(체크리스트), 조치방법 등 세부 시행방안 마련 예정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도입 초기에는 계도위주로 운영할 예정
- 내부회계관리제도 외에 금융감독원의 중점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구분	추진 과제
중대 회계부정의 적발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리스크 요인에 대한 진단 및 선제적 대응 · 디지털 감리 등 혐의 적발·입증기능 제고를 위한 감리수단 강화 · 익명신고제 도입을 통한 회계부정 제보 활성화 유도
심사 실효성 제고로 적정정보 적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 심사제도 정착을 통한 신속한 정보공시 유도 · 新분식위험 측정시스템 개발 등으로 심사 실효성 제고 · 기업의 내부감사(감사위원회) 역할 충실화 유도
회계법인의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모니터링 및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 강화 · 감사품질 정보에 대한 충실성 및 접근성 제고 ·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 정착 지원
탄력적 감독으로 新제도 정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기준의 합리적 운용을 통한 제재 수용성 제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 관련 지원 지속(시행초기로 계도 위주 운영) · 회계인프라 취약기업에 대한 지원과 감리사례 등 정보 제공 확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개정

(‘20.4.29, 금융위원회)

- 2020년 4월 29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20년 5월 19일 공포됨

- 외부감사법 주요 개정 내용

- ▷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지정하여, 기존 민간 중심으로 개최되었던 회계의 날 기념식을 2021년부터 국가 주관 행사로 전환하여 운영함
- ▷ 2021년 5월 19일 시행될 예정

- 공인회계사법 주요 개정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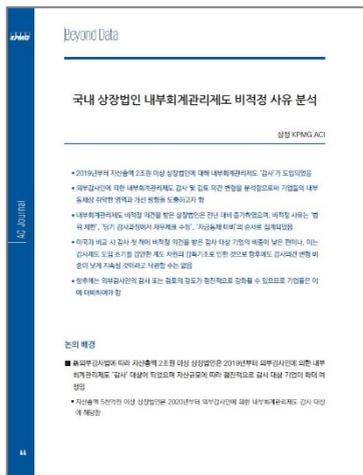
- ▷ 기존에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사원(주주)의 배우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회사에 대하여 감사가 금지되었던 것이 완화되어, '비재무담당 직원인 회사'일 경우 감사가 가능해짐
- ▷ 공인회계사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에 대한 금지 및 벌칙 규정이 신설됨
- ▷ 2020년 5월 19일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됨

[Back to top](#)

II. Article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KPMG의 보고서, 국내외의 주요 연구 소개

국내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분석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되었으며, 비적정 사유를 분석하였습니다.

비적정 사유는 '범위 제한(29.6%)*', '당기 감사 과정에서 재무제표 수정(17.1%)', '자금통제 미비(15.1%)의 순서로 집계되었습니다.

미국(**)과 비교 시 감사 첫 해에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의 비율이 낮은 편이나, 이는 감사제도 도입 초기를 감안한 계도 차원의 감독기조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삼정 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 검토자료 불충분 또는 부적합, 운영실태보고서 미제출, 운영실태 평가 미수행, 통제절차 '설계' 미비 등 포함. 미국의 경우, 이러한 '범위제한'의 사유로 인한 비적정 사례는 없음.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됨

(**) 미국의 경우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 '정보기술(IT) 통제 미흡', '업무 분장 미흡'이 비적정 감사 의견 사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 14.8%, 11.4%인 반면, 국내는 동 비중이 각각 4.6%, 0%, 0%임

Subsequent events, going concern, unusual items and risk disclosure impacts of COVID-19



Global KPMG에서는 코로나19가 SOX 404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인력운용, 고객 및 직원의 안전문제,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한 비상경영 등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내부통제가 약화되거나 우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통제는 미뤄지거나 무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미래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임을 본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처] Global KPMG

[Back to top](#)

III. FAQ

新외부감사법 등 강화된 법규를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감독당국·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등의 유관기관을 통해 자주 질의된 이슈를 답변 및 관련 법규와 함께 정리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교육 이수 시간 및 대상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2020.3.24)

Q.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이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이수 40시간에 대해 공시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교육이수시간 40시간에 대한 근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추가로, 교육 대상은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 내부회계전담조직만 이수를 하면 되는지, 재무회계 담당 임원 및 직원까지 범위로 해야할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관련 근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A.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한 교육의 의무 이수 시간은 정해진 바가 없음.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회사의 대표자, 감사,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관리·운영하는 임직원 및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교육을 실시)하면 됨

관련 근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6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7호 가목

내부회계관리자 지정 문의의 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2020.4.1)

Q.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본 회사에는 대표이사인 상근이사 1명이 있으며, CFO도 담당하고 있음. 이때 대표이사가 본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해도 되는가? 만약 불가할 경우, 회계담당조직의 팀장이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되어야 하는가?

A. 외부감사법상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게 되어있으므로, 대표이사가 본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됨. 해당 상근이사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집행하는 자(집행임원, 실무책임자 등)가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음

관련 근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Back to top](#)

IV. New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제목 클릭으로 기사 원문 확인 가능

국내 동향

-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에 '범위 제한' 최다...내부 정립 시스템 미비해 [이투데이]**
 - 2019 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으로 '범위제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아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더 커질 전망이다
- **코로나 19 로 1 분기보고서 지연제출 기업 23 곳 제재 면제 [연합뉴스]**
 - 코로나 19 로 1 분기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23 곳이 행정제재를 면제받게 됨
 -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인도·말레이시아, 중국 등에 있어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등으로 결산지연 문제가 발생한 곳이 대부분임
 - 이번 조치로 1 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은 기존 5 월 15 일에서 6 월 15 일로 연장됨
- **금융당국, "코로나 19 금융손실, 기업보고서에 유연 적용"**
 - 금융당국이 코로나 19 지원에 참여한 금융기관과 지원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감사인이 금융상품 손상 규정을 적용할 때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권고함
- **임찬규 GKL 상임감사 "자율적 내부통제 선진화 위해 노력" [파이낸셜뉴스]**
 - GKL 의 임찬규 상임감사는 4 대 감사전략 방향 중 하나로 '위험 예방 활동 강화 및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를 선정했다고 밝힘
 - 이에 따른 주요 실행과제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강화', 'E-감사시스템 고도화 및 상시 모니터링 강화' 등을 수립함

해외 동향

- **Small companies avoid internal controls attestations by taking on debt**
[Accounting Today]
 - 지난 3월, 美 SEC는 연간 수익이 1억 달러 미만인 소규모 회사에 대하여 ICFR(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미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면제하도록 규정을 변경하였음
 - 이에 많은 회사들이 재무 구조를 변경하여 ICFR 감사를 피하려 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이를 소개함
- **COVID-19: Considerations for Internal Controls Over Financial Reporting** [The National Law Review]
 - 코로나 19의 대유행이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ICFR 관점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함
- **COVID-19 Impacts on Accounting, Disclosures and Internal Controls** [JSSUPRA]
 - 코로나 19가 회계, 공시, 내부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함
 - [보고서 원문 다운로드\(클릭\)](#)

[Back to top](#)

V. Event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세미나, 포럼, 교육 프로그램 등 행사 소개

[삼정 KPMG 세미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응전략

- 주 최: 삼정 KPMG
- 일 시: 2020년 6월 18일(목) 13:30~17:00
- 장 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 119 더 플라자 호텔 별관 11층 그랜드 볼룸
- 내 용

Time	Agenda	Speaker
13:30 ~ 14:00 [30분]	참가자 등록	
14:00 ~ 14:05 [05분]	Opening Remarks	김교태 회장 (삼정KPMG)
14:05 ~ 14:30 [25분]	Session I - 개관 • 연결 KSOX 관련 법규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 • 감독당국의 연결 KSOX 감독 방향	전규안 교수 (송실대학교 부총장)
14:30 ~ 15:00 [30분]	Session II - 개별 KSOX 감사 경과 공유 • FY2019 KSOX 감사결과 분석 (한미 (K)SOX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한상현 전무 (삼정KPMG)
15:00 ~ 15:40 [40분]	Session III - 그룹 관점의 연결 KSOX 구축방안 • 그룹 차원의 연결 KSOX 구축방안 • 연결 KSOX 구축/운영의 주요 이슈 및 결정사항 • 연결 KSOX 구축 실무	김유경 전무 (삼정KPMG)
15:40 ~ 16:00 [20분]	Coffee / Tea Break	
16:00 ~ 16:20 [20분]	Session IV - 연결 KSOX 핵심과제1 • 연결 KSOX 운영 규정, 조직 및 프로세스 구축방안 • 규정, 성과평가/교육체계 등 조직운영을 위한 고려사항	심정훈 상무 (삼정KPMG)
16:20 ~ 16:40 [20분]	Session V - 연결 KSOX 핵심과제2 • Group-wide 내부통제체계 운영을 위한 IT 인프라 활용 방안	이혜령 이사 (삼정KPMG)
16:40 ~ 16:55 [15분]	Q&A	All KPMG's Speakers
16:55 ~ 17:00 [05분]	Closing Remarks	한은섭 감사부문 대표 (삼정KPMG)

- 시간 및 주제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세미나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참가신청:** 상단 Register 버튼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 사전등록(선착순)
 - [\[참가신청하기\]](#)
 -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참석 인원을 250명으로 제한합니다. (회사별 최대 2명)**
 -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 문의처: 신정민 (02-2112-7731, jungminshin@kr.kpmg.com)

감사 및 감사위원을 위한 2020년 제1회 정기 포럼

- **주 최:**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
- **일 시:** 2020년 6월 9일(화) 07:20~10:00
- **장 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 119 더 플라자 호텔 별관 11층 그랜드 볼룸
- **내 용**

Time	Agenda	Speaker
07:20 ~ 07:30 [10분]	참가자 등록	
07:30 ~ 08:05 [35분]	조찬	
08:05 ~ 08:10 [05분]	인사말1	금융위원회 최준우 증선위 상임위원
08:10 ~ 08:20 [10분]	인사말2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중경 회장
08:20 ~ 09:00 [40분]	주제1. 감사인간 의견불일치의 사유 및 해법모색	고려대학교 정석우 교수
09:00 ~ 09:10 [10분]	Break Time	
09:10 ~ 10:00 [50분]	주제2. 감사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감사위원회 모 범규준 매뉴얼·체크리스트 업데이트) 소개	삼정KPMG 심정훈 상무

- 시간 및 주제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세미나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Back to top](#)

Key Contacts



한은섭 대표

삼정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김유경 전무

K-SOX TFT Leader

변영훈 부대표	기계조선해양, 제약·바이오, 제조 산업 부문 담당
신장훈 부대표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위승훈 부대표	자동차, 철강 산업 부문 담당
조성민 부대표	금융 산업 부문 담당
조원덕 부대표	금융 산업 부문 담당
허세봉 부대표	품질관리 담당
권영민 전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박성배 전무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이종우 전무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임근구 전무	건설업, 공기업, 교육 및 의료 산업 부문 담당
최재범 전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한상일 전무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한상현 전무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황재남 전무	에너지, 화학, 제조 산업 부문 담당
도정욱 상무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박상욱 상무	건설업, 공기업, 교육 및 의료 산업 부문 담당
신광근 상무	전산감사, 정보 리스크 관리 담당
심정훈 상무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리스크 컨설팅 담당
윤주현 상무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전현호 상무	기계조선해양, 제약·바이오, 제조 산업 부문 담당
정 현 상무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지동현 상무	기계조선해양, 제약·바이오, 제조 산업 부문 담당
황구철 상무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Privacy](#) | [Legal](#)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0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